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“해당 소관 국장”을 “부구청장”으로,
“소관부서 과장이 맡는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
같은 조 제5항 중 “팀장이”를 “과장이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3항 중 “7명 이상”을 “과반수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4항 중 “5명 이상 7명 이내”를 “11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해당 소관 국</u> <u>장이</u> 맡고, 부위원장은 <u>소관부서</u> <u>과장이</u> 맡는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직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 사는 위원회 담당 <u>팀장이</u>, 서기는 위원회 담당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<u>7명 이</u> <u>상</u>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0조(소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<u>5명 이상 7명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구청장</u>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</u> <u>호선한다</u>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과장이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과반수</u>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소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11명 이상</u>----- 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